

서울특별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송인2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검 토 보 고 서

2019. 12.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이유

- 가. 정비구역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 구역에 해당되어 동조례 제14조 제10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함.

2. 대상구역

연번	구역명	적용조항	내 용	비고
1	송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¹⁾	제14조 제3항제2 호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주거정비과 재개발관리팀 강문권(7188)

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사업의종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1	기정	송인2	종로구 송인동 61 번지 일대	21,000	주택재개발	공동주택	60%이하	190%이하	12층 이하
	변경	해 제							

1) 정비예정구역고시일 : 2004.06.25. (서고시2004-20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하여,
- 이 의견청취안은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로구 송인동 61번지 일대(21,000 m^2) 송인2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하 ‘송인2구역’)을 ‘구역 지정 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구역²⁾으로 간주하여 직권해제 대상으로 제출한 사안임.

2)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 상정사유	
해당구역은 2004년 8월 3일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4년이 경과하였고, 도정 조례 제14조 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종로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를 요청함	
위 치	종로구 송인동 61번지 일대
면 적	21,000㎡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업 추진경위>

-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인 송인2구역은 '04년 정비예정구역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음. '10년 사업방식이 전환되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3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04년 당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고, 이어 '14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동의를 미충족으로 반려되었음. 이후 해당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로 보고, 금년 3월 직권해제를 신청한 사항임.

구분	구역명	면적 (㎡)	용적률 (%)	층 수	건폐율 (%)	사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당초	송인제2 주택재개발예정구역	21,000	190	12층 이하	60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2004. 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
변경	해 제							



〈추진경위〉

- 2004.06.25.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송인2재개발정비예정구역)
- 2004.08.03. :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10.04.22. : 창신·송인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송인제2재정비촉진구역)
- 2013.10.10.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송인2재개발정비예정구역 환원)
- 2014.02.18.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 접수
- 2014.03.27.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서 반려(동의율 법적요건 미충족)
- 2019.03.06. :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요청(구→시) ※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 2019.05.02. : 전문가 검토회의(적합)
- 2019.06.05.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 2019.07.05. ~ 09.04. : 해제 대상구역 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직권해제 기준 적합 여부〉

- 해당 구역은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도시정비조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위원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직권해제를 신청한 구역임.
- 송인2구역은 ‘18년 3월 26일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추진위원장도 재산 처분 후 타지역으로 이주한 상황이며, 종로구청에서 직권해제 요청 후 추진위원회 측에 사용비용 보조 신청 여부에 대하여 유선 상으로 확인³⁾하였으나, 해제구역 공고 시점인 금년 8월경부터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3) 당시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또한 직권해제에 대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토회의 결과, 추진위 측도 직권해제 후 대안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원하고 있어 직권해제 절차 이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도 해당 주민들의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하고, 구역 해제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 바, 대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종합하면, 추진위원장 이주 등 사실상 추진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 대다수가 해제에 동의하는 점,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역해제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도시정비법」 제21조제3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직권해제 신청 전 주민설명회 시 대안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현재 창신·송인지구는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으로 지정('14.5.7)되어 있는 바, 직권해제 후 지역의 관리를 위한 후속적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음.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은정
연락처	02-2180-8208
이메일	urbanth@seoul.go.kr

【붙임-1】 직권해제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제80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영 제30조, 시행규칙 제8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으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 또는 법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이나 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10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으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

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 시행규칙 제12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으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

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법 또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5. 삭제 <2019.9.26>

④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의 명칭, 위치, 해제 이유 및 근거등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등이 제2항에 해당한다고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구역의 추정비례율이 주민의견조사 당시 대비 10퍼센트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찬성자 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를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⑧ 시장은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영 제26조 각 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3.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

4.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영 제43조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다)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6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70퍼센트 이내

2. 제14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검증된 금액 범위

④ 추진위원회의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조합의 보조금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⑥ 구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클린업시스템(이하 "클린업시스템"이라 한다) 및 구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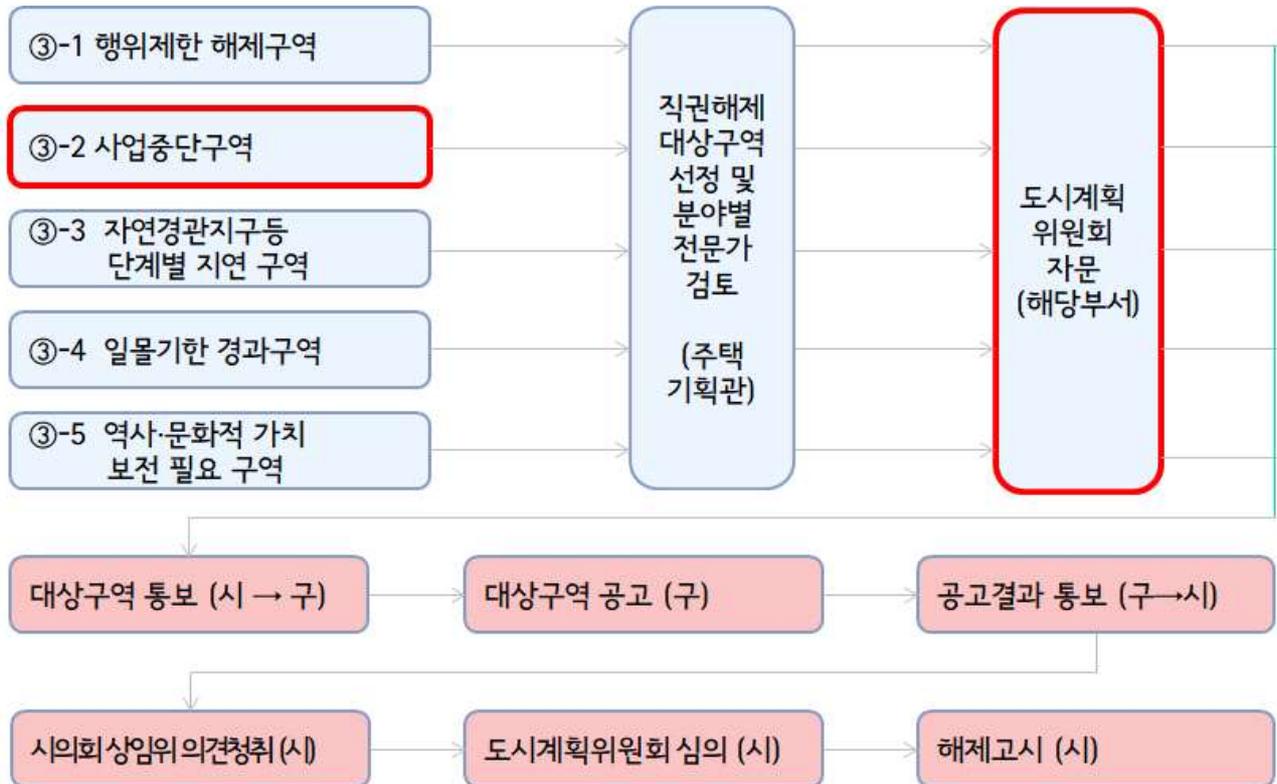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클린업시스템 및 구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⑩ 구청장이 영 제1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직권해제 절차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19. 05. 02.)

【붙임-3】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및 자치구 검토의견

■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2019. 0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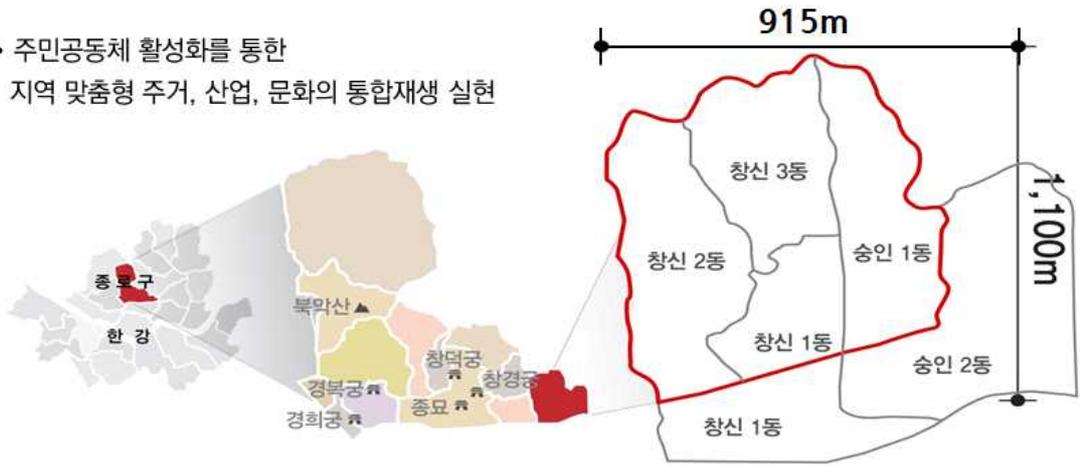
안건명	회의결과	적용조항	회의내용	비고
승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적합	제14조 제3항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04.8.3.) 이후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있고(14년 경과) 추진위원장의 타지역 이주 및 사무실폐쇄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정비예정구역으로, - 추진위 측도 직권해제 후 대안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추진을 원하고 있어 <u>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관련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u> - 직권해제 후 대안사업에 대하여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 안내 필요. 	

■ 자치구(종로구) 검토의견 (2019.6,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

- 2018. 3. 2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폐쇄 후, 2019. 2. 26. 정비구역 해제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하고,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함.**
-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외지(강화도)로 이주하였고 시공사(대우건설)와의 대여금 관련 소송 종결 등으로 보아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상황임.**
- **대안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필요.**

【붙임-4】 창신송인 도시재생사업 개요 및 구상도('16.10.9, 주민설명회)

- 사업범위
 - 위치 : 종로구 창신1·2·3동, 송인1동 일원
 - 면적 : 830,130㎡ (창신1동 남측 제외)
 - 인구 : 29,360명 (12,651세대)
- 사업비
 - 총 200억 원 (마중물 사업, 국시비 5:5 매칭)
 - ※ 협력사업 포함시 : 1,007.4억원
- 사업내용
 - 주민역량강화,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 역사문화자원화
- 비전
 - 낙산과 동망봉이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창신송인
- 목표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주거, 산업, 문화의 통합재생 실현



창신송인 도시재생사업 및 구상도

총 2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

(마중물사업 12개, 지자체협력사업 8개, 중앙부처협력사업 4개, 민간협력사업 1개)

마중물 사업 (200억원)	
주거 환경 개선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23억원)
	누리공간 조성(6억원)
	공동이용시설 조성(61.1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작업장 조성(8.9억원)
	일자리지원(8억원)
	봉제박물관 건립(36억원)
	채석장 일대 명소화(20억원)
역사문화 자원화	마을탐방로 기반조성(14억원)
	백남준 기념공간 조성(13억원)
주민 역량 강화	주민공모사업(5억원)
	주제공모사업(2.5억원)
	마을배움터(2.5억원)



※ 사업비, 사업일정 등은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563.7억원)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도시경관개선사업
LED간판정비	서울가꿈주택
공공미술프로젝트	에너지저립마을조성
에너지저립마을조성	노후하수도정비
노후상수도정비	
중앙부처 협력사업(242.5억원)	
주차장 및 청소년문화시설 조성	예술문화지역재생
공공선정비	창신골목시장활성화사업
민간협력사업(1.2억원)	
희망의 집수리 사업	